기업구매자금어음 추심의뢰서

주식회사 하나은행 앞

본인은 귀 은행과 체결한 「기업구매자금 결제제도 이용 약정서(판매기업용)」의 내용에 따라 다음의 기업구매자금어음 대금을 추심의뢰하며, 대금은 지정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환어음 대금 추심의뢰 명세 (단위 : 원)

기업구매자금어음 (지급인) 내용				세금계산서			지급은행
사업자번호	사업자명	어음금액	발행일	발행일	대표품명	공급가액	

※ 기업구매자금어음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1일(발행일 포함) 이내에 추심의뢰 되어야 합니다.

2. 첨부서류 : 기업구매자금어음(기업구매자금용) 및 세금계산서

20 년 월 일

본 인 : (인)

사업자번호 : (인)

(TEL FAX)

절 취 선

영 수 증

귀하 20 년 월 일

귀사가 제출한 위의 기업구매자금어음 추심서류와 추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히 영수합니다.

건수	금액	수수료	비고

주식회사 하나은행 지점 (인)

5-06-0196(1-1) (2021.09 개정)
(보존년한 : 완제일로부터 10년)

하나은행